



제 432국회 (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위치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총포보관 해제를 의무적으로 금지함〉

■ 윤후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804호)

2026.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나 아 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윤후덕의원 등 15인
2. 제안연월일 : 2025. 12. 3.
3. 회부연월일 : 2025. 12. 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관청이 지정한 장소에 총포 및 실탄 또는 공포탄을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며, 허가받은 용도에 따라 총포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위치정보 수집에 동의하고 보관해제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관해제 신청이 적합하지 않거나 신청인이 위치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등 총기사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허가관청의 재량적인 판단으로 보관해제 여부를 결정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현행법은 허가관청에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음.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살상 능력을 지닌 총포의 보관해제 여부를 행정적 판단의 영역으로 남겨두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총포 보관해제에 관한 허가관청의 재량을 제한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엄격한 기준과 실시간 위치정보 관리하에 제한적으로 보관해제를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총포류로 인한 범죄 및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강력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제3항 및 제4항).

Ⅲ. 검토의견

개정안 제14조의2제3항은 위치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또는 총포 보관해제 신청에 정당한 사유가 없거나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포 보관해제를 금지하고, 개정안 제14조의2제4항은 보관대상이 되는 총포 등의 보관해제 거부에 관한 사항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제14조의2(총포의 보관) ① 제12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총포와 그 실탄 또는 공포탄을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총포를 허가받은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허가관청에 보관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포의 보관해제 기간 동안 총포 또는 총포소지자의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위치정보수집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허가관청은 제2항에 따른 보관해제 신청이 적합하지 않거나 위치정보수집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와 그 밖에 공공의 안전유지	제14조의2(총포의 보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허가관청은 제2항에 따른 보관해제 신청이 다음 각 호 중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포의 보관을 해제하여서

현행	개정안
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총포의 보관을 해제하지 않을 수 있다. ④ 보관대상이 되는 총포와 그 실탄 또는 공포탄, 보관 기간 및 장소, 보관 및 보관해제의 절차, <u>위치정보수집</u>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포의 보관을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u>정당한 사유가 없거나 적합하지 않는 경우</u> 2. <u>위치정보수집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u> 3. <u>그 밖에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u> ④ ----- ----- ----- -----<u>보관해제 거부, 위치정보수집</u>----- -----.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¹⁾은 총기 중 엽총, 공기총 등을 소지하기 위해서는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같은 법 제14조의2 제1항은 총포를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관할 경찰서)에 보관하도록 하며, 같은 법 제14조의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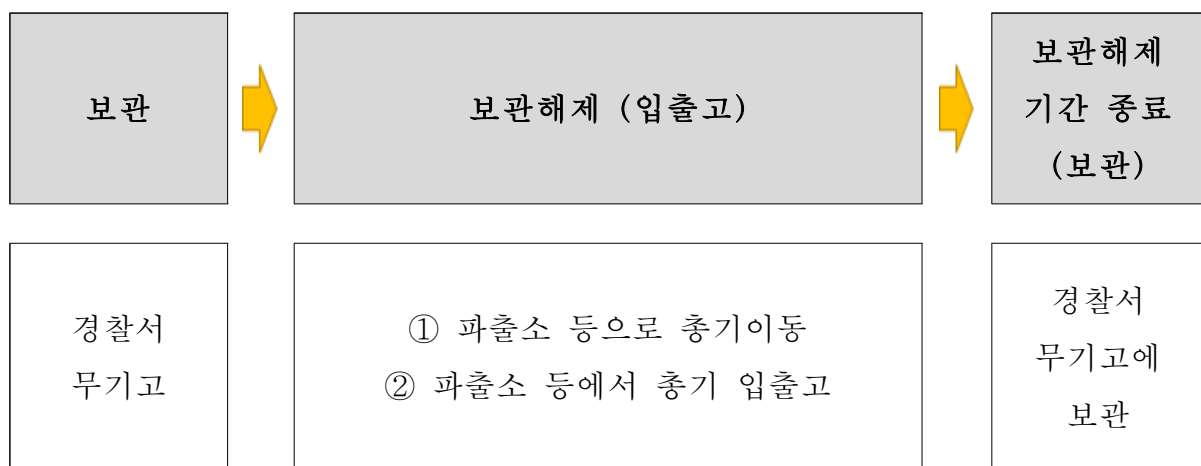
1)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 ①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총포 소지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총포(제2호에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2. 총포 중 엽총·가스발사총·공기총·마취총·도살총·산업용총·구난구명총 또는 그 부품: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
3. 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및 석궁: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

제2항은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 총포를 허가받은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 등에 허가관청에 보관해제를 신청하도록 하면서 위치정보수집 동의서를 함께 제출²⁾하도록 하고 있음.³⁾

보관해제가 되는 경우 경찰서에 보관⁴⁾되고 있던 총기는 파출소 등으로 옮겨지게 되고, 파출소 등에서 입고, 출고 절차를 거침. 총기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실제 총기를 사용할 때 파출소 등에서 총기를 출고하고, 총기 사용을 마친 뒤에 파출소 등에 총기를 입고함. 보관해제 기간이 종료되면 관할 경찰서로 총기를 옮겨 보관함.

총기의 보관 및 보관해제 기간 동안 입출고



경찰청에 따르면, 실무적으로 총기의 종류에 따라 입출고 장소 및 출고 시 위치추적전자장치 등이 부착되는지 등에 차이가 있음. 유해조수구제 용도로 사용되는 엽총은 보관해제 기간 동안 지구대 또는

2) (참고 2) 총포 보관해제 신청서 양식, (참고 3) 위치정보수집 동의서 양식

3) 참고로, 현행법 제14조의2는 2015년 7월 24일 공포되어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되었는데, 개정 사유는 당시 연이어 발생한 총기사고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과 관련됨(의안번호 1915744).

4) (참고 1) 총포 보관확인서 양식

과출소에서 입출고되고, 출고 시에는 출고사실이 전산시스템에 등록되고, 총기에 위치추적전자장치 등이 부착됨.⁵⁾

엽총의 경우에는 총기 보관해제 신청 시 위치정보수집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찰청이 총기 보관해제를 하지 않고 있음.

반면, 동물원 등에서 사용되는 마취총, 사격선수용 총기, 산업용총에 대해서는 위치추적전자장치 등을 부착하지 않고, 보관해제 기간 동안 동물원의 간이무기고 또는 사격장의 무기고 등에서 자체적인 감독 아래 입출고를 진행하며, 경찰청은 사후에 점검하고 있음.

개정안은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 위치정보수집에 동의하고, 보관해제 신청이 적합한 경우에만 허가관청이 경찰서 등이 보관해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총기관리를 보다 엄격하게 하고, 총기류 인한 사고 등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모든 총기에 대해 보관해제 시 의무적으로 위치정보 수집에 동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 제도의 운영에서는 위험성이 높은

5)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5(위치정보수집을 위한 총포소지자의 준수 의무)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보관해제된 총포의 소지자는 위치정보수집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위치정보수집 방법 중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하나의 방법에 따를 것
 - 가. 휴대전화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사용하는 방법. 이 경우 위치정보수집에 동의한 휴대전화 위성위치확인시스템의 작동을 유지해야 한다.
 - 나.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위치추적전자장치를 총포에 부착하는 방법. 이 경우 위치추적전자장치를 임의로 제거하거나 훼손해서는 안된다.
2.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휴대전화 응용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및 그 작동을 유지할 것
3. 총포를 재보관할 때까지 제1호가목(위치정보수집 방법이 제1호가목으로 지정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제2호의 휴대전화를 작동 가능한 상태로 휴대할 것

엽총 등에 대해서만 위치추적전자장치 등을 부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정안의 적용범위를 모든 총기로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다음으로, 개정안 제14조의2제3항제1호는 신청에 정당한 사유가 없거나 신청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보관해제를 해서는 안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신청이 적합한지 여부는 허가관청이 판단하고, 허가관청이 부적합한 신청으로 판단했음에도 보관해제를 하는 경우를 논리적으로 상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해당 요건을 기속행위로 개정하는 실익이 높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그리고, 법제적 측면에서 행정청의 재량을 부여하면서 일부의 사유에 대해서는 기속행위로 규정하는 경우 문장의 본문에 재량행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단서에 기속행위를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⁶⁾을 감안하여, 개정안 제14조의2제3항 각 호 외 부분의 문장 순서를 “허가관청은 OO의 경우 총포의 보관을 해제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제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포의 보관을 해제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수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로, 경찰청은 총포의 보관해제 신청 시 정당한 사유가 없거나,

6) (입법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면허의 취소·정지)

① 제28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준 시·도경찰청장(이하 “면허관청”이라 한다)은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위치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보관해제를 의무적으로 제한하여 총기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 공감하면서, 현행 제도상 보관해제 시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총포는 위험성이 높은 유해조수(멧돼지 등) 구제용 및 수렵용 총포에 한정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개정안과 같이 위치정보 수집을 모든 총포 보관해제의 요건으로 확대할 경우, 과잉 규제의 위험과 더불어 실제로 집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문 의 처
02) 6788-5345

참고 1

총포 보관확인서 양식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서식] <신설 2015.10.30.>

제 호

보관확인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제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		전화번호(휴대전화)	
보관물	[]권총 []소총 []기관총 []포 []엽총 []공기총			
	제조국명	제조사	명칭	형식
	제조번호	구경	보관사유	허가번호
적용법조				
보관 확인자	보관 경찰관서	보관일시	보관사유	집행관 성명

참고 2 총포 보관해제 신청서 양식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3서식] <신설 2015.10.30.>

보관해제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		전화번호(휴대전화)	
용도	☐ 수렵 ☐ 유해조수 구제 ☐ 사격경기 ☐ 호신 ☐ 어획 ☐ 건축 ☐ 공업 ☐ 기타 산업 ☐ 신호·구명 ☐ 도살·마취 ☐ 시험·연구 ☐ 수리·매매 ☐ 기타			
총포 정보	총종(銃種)	☐ 권총 ☐ 소총 ☐ 기관총 ☐ 포 ☐ 엽총 ☐ 공기총		
	제조국		제조사	
	명칭		형식	
	구경		총번	
수렵 관련 정보	수렵 지역			
	총기 이동일시	출발일시	도착일시	
	총기 이동경로	출발지역	도착지역	
	보관해제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와 같이 총포 보관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 찰 서 장 귀하

첨부서류	1. 포획승인증 등 반환을 필요로 하는 이유를 증명하는 서류 2. 총포 보관증명서 3. 위치정보수집 동의서	수수료 없음
------	---	---------------

참고 3 위치정보수집 동의서 양식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4서식] <개정 2019. 9. 19.>

위치정보수집 동의서

동의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본인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총포를 보관해제하여 사용하기 위해 본인 소지 총포 또는 휴대폰의 위치정보를 경찰청에서 수집·활용 및 제3자에 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서명 또는 인)

경 찰 서 장 귀하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총포 또는 총포소지자의 실시간 위치정보 확인을 통해 법령 위반행위 확인 및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처 등 총포 오남용 및 안전사고 예방에 활용
- ◇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총포 보관해제시부터 재보관 완료 후 1개월
- ◇ 동의 거부권리 안내 : 위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총포 보관해제가 제한됩니다.

동의함 ☐ 동의 안함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 제공받는 자 : 이동통신망사업자(MNO) 및 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MVNO)
- ◇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총포 또는 총포소지자의 실시간 위치정보 확인을 통해 법령 위반행위 확인 및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처 등 총포 오남용 및 안전사고 예방에 활용
- ◇ 제공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총포 보관해제시부터 재보관 완료 후 1개월
- ◇ 동의 거부권리 안내 : 위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총포 보관해제가 제한됩니다.

동의함 ☐ 동의 안함 ☐

☐ 위치정보의 수집·이용

- ◇ 위치정보수집·이용 목적 : 이동통신망사업자 및 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로부터 총포 또는 총포소지자의 실시간 위치정보 확인을 통해 법령 위반행위 확인 및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처 등 총포 오남용 및 안전사고 예방에 활용
- ◇ 위치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총포 보관해제시부터 총포 재보관 또는 당해 수렵기간 종료 후 1개월
- ◇ 동의 거부권리 안내 : 위 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총포 보관해제가 제한됩니다.

동의함 ☐ 동의 안함 ☐

본인은 개인정보·위치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서명 또는 인)